**관리감독자 우편 교육 위탁 계약서**

회사명: (이하 “회사”이라 함)와 대한안전교육협회 (이하 “협회”라 함)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“회사” 임직원 (이하 “수강생”이라 함) 의 교육훈련 (이하 “교육훈련”이라 함)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 (이하 ‘본 계약’이라 함)

**제1조 【목적】**

본 계약은 “회사”에서 수강생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“협회”와 “회사”의 권리·의무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 【교육방법】**

① “회사”와 “협회”는 교육훈련 방식을 우편교육으로 지정하고, “협회”는 우편 교재 및 평가사이트를 구축하여 “회사”에게 제공한다.

② “회사”는 “협회”가 교육훈련 실시를 위해 필요한 수강생 명단을 “협회”에게 제공한다.

③ “협회”는 회사로부터 수강생 명단을 제공받은 후, “회사”에게 수강생 수만큼의 ID를 배부한다.

**제3조 【교육료】**

① “회사”는 “협회”에게 교육료를 1인당 59,000원(면세)을 지급하기로 한다.

② 교육료는 교육시작 전까지 “회사”가 “협회”에게 제출한 수강생 명단을 기준으로 한다.

교육이 시작된 이후, 추가되는 수강생에 대해 제3조 1항에 따라 1인당 수강료를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.

③ “회사”는 교육 시작전에 “협회”에게 아래 계좌로 전부 지급한다. 단, 교육료 지급 약정일이 토요일 또는

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에 지급한다.

***(협회 계좌 : 신한은행 / 계좌주 : (사)대한안전교육협회 정성호 / 계좌번호 : 140 – 014 - 138630 )***

**제4조 [계약기간]**

본 계약의 기간은 교육 시작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“협회”는 해당 계약서 날인일로부터 교육훈련 제반사항 준비를 시작한다**.**

**제5조 【신의성실 및 비밀보장】**

“회사”와 “협회”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 “협회”는 업무 수행 과정에

서 취득한 비밀에 관해서는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**제6조 【손해배상】**

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한다.

**제7조 [비밀유지]**

① “회사”와 “협회”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 당사자의 업무 내용, 영업정보 등을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제3자에 누설할 수 없으며 이는 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.

②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대방의 상호, 상표 및 기타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 표지를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.

**제8조 【개인정보 처리 재위탁】**

회사는 수탁자가(이하 “협회”) 교재 배송을 위해 수강생의 개인정보 (이름, 핸드폰번호, 주소)를 제3자(CJ대한통운) 에게 일부 제공함에 동의한다

( 개인정보 처리위탁/재위탁 보호조치에 해당,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른다. ).

**제9조 【계약해지】**

“회사”와 “협회”는 다음 각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.

①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, 상대방은 15일 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이행을 최고할 수 있고 최고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당사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② 일방 당사자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, 서면 통지 후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가. 어느 일방에 대해 강제집행, 경매, 가압류, 가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, 파산선고,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, 해산결의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

나. 어느 일방이 본 계약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명령을 받은 경우

다.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라. 기타 본 계약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

③ 어느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책 당사자는 그 손해를 본 계약의 계약금액을 한도로 배상하여야 한다.

**제10조 【분쟁해결】**

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,

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한다.

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기명·날인하여 회사와 협회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월 일

|  |  |
| --- | --- |
| **“회사명””** | **“협회”** |
| 상호 : 주소 :  | 상호 : 사단법인 대한안전교육협회주소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번길 6, 7층  |
| 대표이사 : (인) | 협회장 : 정 성 호 (인) |
|  |  |